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98
----------	-------

발의연월일 : 2026. 7. 16.

발 의 자 : 손 술 · 전종덕 · 전진숙

김종민 · 조계원 · 정혜경

임미애 · 윤종오 · 정춘생

용혜인 · 한창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는 판결의 증거가 위조된 경우 등을 재심 사유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제6조)에 따라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26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비준한 조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지는 것임에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Treaty-based bodies)에서 대한민국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를 재심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음.

이는 결국 헌법의 국제법 존중 규정(제6조)에도 위반되고 그 자체로 위 협약 위반에 해당하며 재판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도 불충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바,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들이 제기하여 원

고패소 확정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를 재심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것임.

이에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Views)을 한 때를 형사소송의 재심사유로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국제법 준수 의무 이행 및 재판당사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0조제8호 신설 등).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0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Views)을 한 때

제421조제1항 중 “第7號”를 “제7호, 제8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20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 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 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420조(재심이유)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u> <u>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u> <u>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In</u> <u>dividual Communications)에</u> <u>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u> <u>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u> <u>지의 결정(Views)을 한 때</u>
第421條(同前) ① 抗訴 또는 上告 의 棄却判決에 對하여는 前條 第1號, 第2號, 第7號의 事由있 는 境遇에 限하여 그 宣告를 받은 者의 利益을 爲하여 再審 을 請求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第421條(同前) ① ----- ----- -----제7호, 제8호-----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